

보호구 지급대장

사업주는 유해 · 위험 작업 근로자에게 작업 조건에 맞는 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해야 합니다. (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)

공사명	성수동 47-3 근린생활시설 철거공사	시공사	대한종합건설(주)
현장 주소	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이로 47-3	현장소장	김성훈
공사 기간	2026. 08. 10 ~ 2026. 09. 05	상시 근로자	8명

01 지급 기록

지급일	성명	품목	수량	지급 사유	수령 서명
08-10	한동수	안전모 · 안전화	각 1	신규 투입	(서명)
08-10	한동수	방진마스크 (특급)	10	해체 분진 구간	(서명)
08-17	응우옌 반 남	안전모 · 안전화 · 방진마스크	1 · 1 · 10	신규 투입	(서명)

품목 기준 (이 현장)

전 구역: 안전모(턱끈 체결) · 안전화 상시 / 해체 · 반출 구간: 방진마스크 특급 / 단부 · 개구부 2m 이상: 안전대 / 브레이커 작업 반경: 귀마개, 훼손 · 분실 시 즉시 재지급하고 본 대장에 기록합니다.

구분	소속 / 직책	성명	서명	일자
지급 관리	현장 / 관리감독자	박정우	(서명)	월말 일괄
기록 관리	컨스트로 / 안전 컨설턴트	이준혁	(서명)	월말 일괄